



## I. TPP 추진 배경 및 동향

### □ 중국에 대응한 미국·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협력 협상 타결

○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·태평양 12개국\*이 환태평양경제협력(Trans Pacific Partnership: TPP)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음('15.10.5일자).

\*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싱가포르, 멕시코, 페루, 칠레, 브루나이

-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력체(전 세계 GDP의 약 40% 차지)로 향후 TPP 발효 시 동 지역의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확대가 기대됨.

○ TPP는 RCEP\*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등을 통해 아·태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'미·일 중심의 통상전략'으로 해석됨.

\*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, ASEAN 10개국과 한·중·일, 뉴질랜드, 호주, 인도 등 총 16개국간의 다자간 FTA

- 특히, 아·태 지역은 미국의 최대 교역대상지역이자 해외투자지역인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.

<붙임 1 참조>

### □ TPP 타결에 따른 중국의 경제통합협상 노력 본격화

○ 중국은 미·일 중심의 TPP에 대응하여 RCEP의 신속한 체결과 함께, 양·다자간 FTA와 AIIB\*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.

\* '15년 12월 중국 주도로 한국, 인도 등 57개 회원국이 공식 출범 ⇒ 중국은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를 목표

- RCEP 협상 타결 시 세계 인구의 약 49%, 교역의 약 29%를 차지하는 메가 FTA가 탄생하게 됨.

※ '13년 11월 RCEP 1차 협상을 통해 상품 호혜관세 협상방침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 ⇒ '15년 10월 10차 협상을 진행하여 지적재산권, 원산지 규정 등을 논의

- RCEP는 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역내 무역규모가 약 11조 달러로 TPP 무역규모(9.4조 달러)를 상회함.

## II. 주요 협상내용 및 진단

### (1) 협상 개요

#### □ (개방 범위)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목표

○ TPP 가입국별 상품분야 관세 철폐(유보기간 인정) 대상은 품목수 기준 95~100%로, 개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됨.

- 멕시코, 일본, 캐나다, 페루, 호주 등 5개국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반면, 기타 국가들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.

○ 한편, 관세양허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동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,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\*(Tariff Rate Quotas: TRQ) 등 다양한 양허안을 제시하고 있음.

\*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,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책정

#### □ (원산지 기준) 완전누적 기준 도입을 통한 역내 공급체인 강화

○ 완전누적(Full Cumulation) 기준은 누적\*(Cumulation) 기준과는 달리, TPP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부가가치로 인정함.

\* 역내국의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 중간재만을 인정하나, 완전누적은 원산지 재료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판정을 받은 재료도 최종 수출국 원산지로 인정

- 특히, 완전누적은 관세 혜택을 위한 역내산 원산지 지위획득을 용이하게 하여, 역내 자재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급체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.

#### <관세 철폐 제외 품목>

국 가	품 목 명
멕시코	- 커피, 인스턴트커피, 트랙터, 차량, 유제품 등
일본	- 쌀, 육류 및 가공품, 유제품, 표고버섯, 해조류, 파인애플 등
캐나다	- 가금류 및 가공품, 유제품 등
페루	- 유제품, 옥수수, 쌀, 설탕, 시럽 등
호주	- 중고차량 등

출처: TPP 협정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

- 아울러,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산지 규정만 적용하는 등 TPP 당사국간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추구함.
- 다만, 완전누적 기준 도입 시 최종 수출기업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와 공정을 파악하여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나, 검증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## (2) 주요 산업별 협상내용

### □ 산업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

- (자동차)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 일부 국가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  -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, 트럭의 경우에는 완전 관세 철폐를 30년으로 설정함.
  - 캐나다와 베트남(3,000cc 이상)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(각각 6.1% 및 70%) 기간을 각각 5년 및 10년으로 설정함.
  - ※ 자동차 부품의 경우 엔진, 브레이크, 변속기 등 약 400여종 품목에 대해 87.4% (품목수 기준)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, 베어링·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은 완전 철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
- (전기·전자) 컴퓨터, 통신장비, 반도체 등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ITA\*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함.
  - \* 1996년 출범한 무관세 정보기술협정으로, 현재까지 81개국 404개 컴퓨터, 반도체 등 첨단산업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합의를 도출
  - ITA 비가입국인 칠레와 멕시코는 관련 국내법을 완비한 후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, 브루나이는 TPP 발효 1년 이후 가입하기로 함.
- (섬유·의류) 중국산 원사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기 위해 원사 기준을 적용하고, 베트남산 섬유·의류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.
  - 중국산 원사로 제작된 섬유·의류제품에 대한 관세혜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 기준을 적용함. 이에 따라 '원사부터 봉제까지'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역내제품으로 인정함.

< 주요 산업별 협상 내용 >

구 분	협상 내용
자동차·자동차부품	- 일본산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 관세 단계적 철폐
전 기 · 전 자	- 정보기술협정(ITA) 가입 의무 부여
섬 유 · 의 류	- 역내제품 인정을 위해 원사기준 적용
농 · 축 산	- 당사국별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 허용 및 시장개방 확대
바 이 오 의 약 품	-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기간 8년으로 합의
서 비 스 · 투 자	-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자유화에 동의

출처: TPP 협정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

<붙임 2 참조>

- 미국은 제2위 의류 수입국\*인 베트남산 섬유·의류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(17~32%)를 약 1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함.
- \* 2014년 기준 미국의 의류 수입국 현황은 중국(36.7%), 베트남(11.1%), 인니 (5.9%), 인도(4.1%) 순임.
- (농·축산)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합의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.
- 곡물류(쌀, 밀, 보리), 육류(소고기, 돼지고기), 유제품 등 관세유지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함.
- 한편, 일본은 품목수 기준으로 81%의 관세철폐를 합의하였으나, 5대 민감 품목(쌀, 보리·밀, 쇠고기·돼지고기, 유제품, 사탕수수)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.
- (바이오 의약품) 특허권 보호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, 신약에 한해서는 승인일로부터 8년 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기로 함.
-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은 미국 12년, 캐나다·일본 8년, 베트남·말레이시아·호주·뉴질랜드·싱가포르 5년이나, 기타 국가는 관련 규정이 없음.
- (서비스·투자)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함.
-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외국자본의 소매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고, 캐나다도 외국인투자 사전심의 한도를 기존 3.7억 캐나다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함.

### Ⅲ. 파급 영향

#### □ (TPP 가입국) 대부분의 TPP 가입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

○ (선진국 경제) 국가별로 농업, 의약품, 전자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출경쟁력 개선이 예상됨.

- 미국, 호주, 뉴질랜드 등은 소고기, 곡물 등의 수출 증대로 농업 부문의 수혜가 기대되며, 미국, 캐나다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 적용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, 일본은 미국,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산 전자·기계제품과의 경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수출품목에 대한 수혜가 기대됨.
- 이외에도 역내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발전, 전력 등의 부문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, 캐나다, 일본, 호주의 해외사업 진출 수혜가 예상됨.

○ (개도국 경제) 각국의 주요 수출산업별 수혜가 예상되나, 의약품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적용으로 일부 불이익도 상존함.

- 베트남은 TPP 발효 시 관세 하락으로 방직품과 의류 부문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.
-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수출 수혜가 예상됨.
- 칠레, 페루는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 진입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 수출 증대가 전망됨.
- 한편, 신규 바이오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이 8년으로 결정됨에 따라, 개도국 정부와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.

#### □ (한국 경제) TPP 미가입에 따른 부정적 경제효과는 제한적

○ (성장률) 산업통상자원부(2014)는 TPP 가입과 미가입 시의 경제발전 효과(발효후 10년)를 각각 GDP의 1.8% 증가, 0.12% 감소로 예상함.

- 미가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우려되나, 일본과의 경쟁이 심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산업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- 아울러, TPP 12개국 중 일본,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가 발효되었고, 중국 주도의 RCEP과 한·중·일 FTA 협상타결 시 TPP 미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음.

<붙임 3 참조>

○ (국내산업)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에서의 경합이 예상되나, 전반적으로 산업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
- (자동차) 미국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나,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점과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관세철폐(2.5%)가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※ 다만, 자동차 부품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약 90%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므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은 불가피

- (전기·전자)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·가전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경합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나, 휴대전화 등 대부분의 IT 제품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.

- (섬유·의류) 우리기업들은 동 부문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서 현지 생산체제를 확보하고 있어, TPP 발효 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.

- (철강)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은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며, 미국에서 경쟁하는 제품군도 일본과 달라 영향은 제한적임.

<TPP 미가입 시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영향>

구 분	상세 내용
자동차	- 2016년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나,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과의 경합은 불가피
전기·전자	- 휴대전화 등 IT 제품의 경우 무관세 적용으로 영향은 미미하나, 전자·가전제품은 일본과의 경쟁 증가 예상
섬유·의류	- 우리나라 OEM 업체들은 이미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TPP 발효 시 수혜 기대
철강	- 관세인하 적용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며,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

출처: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

## IV. 전망 및 대응방안

### (1) 전망

#### □ TPP 전체 발효보다는 부분 발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

- 2016년 초 TPP 협정문 정식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서명국들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.
  - 특히,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의 관세양허, 원산지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하여 기간 내 전체 발효가 어려울 수 있음.
- 이에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멕시코 등 6개국을 중심으로 국내 비준 절차 완료를 통해 2018년 중 부분 발효\*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.
  - \* TPP 가입국 전체 GDP의 85%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경우, 서명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60일 이후에 부분 발효 가능
  - 다만, 상기 6개국의 부분 발효도 국가별 경제·정치적 이슈로 인해 2019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#### □ 중국은 2016년 하반기 중 RCEP 타결을 통해 TPP에 대응할 전망

- 중국 상무부는 TPP 미가입 시의 경제성장 기회비용을 GDP의 1.35%로 보고 있으며, 향후 가입국이 증가할 경우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.
  - 특히, TPP 참여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약 36%로 섬유·의류, 자동차, 식품가공 등 일부 품목에서의 수출 감소\*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.
    - \* 섬유·의류, 식품가공, 자동차 수출은 약 3%, 전자제품, 비철금속제품 수출은 약 1.5%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중국 내에서도 TPP 가입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나, 관세,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가입기준 미충족으로 현재로서는 가입 가능성이 낮음.
- 오히려 중국은 RCEP 및 한·중·일 FTA 협상 가속화, 중-ASEAN FTA 업그레이드와 더불어, AIIB 추진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  - 특히, 중국은 RCEP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내 참여국들과 함께 2016년 하반기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## (2) 대응방안

### □ (정부) RCEP 협상의 적극 추진 및 인도 등과 TPP 가입 공동 대응

- 우리 정부는 2016년 하반기로 예정된 중국 주도의 RCEP 타결에 중점을 두고 관련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 - 특히, TPP 12개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가 발효되었고 미체결국인 일본과는 한·중·일 FTA 협상이 진행 중으로, TPP가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, TPP는 전체 발효보다 부분 발효 가능성이 높고 지연 가능성도 상존하는 등 가입 추진시 다방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됨.
  - 특히, 12개 가입국의 양허형태가 매우 상이하므로, 참여시 시장 개방에 따른 수혜 및 피해 분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함.
- 이와 함께, 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, 협상력 제고를 위해 단독 추진 보다는 인도 등 가입희망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### □ (당행) TPP 수혜국 중심의 금융지원 강화 및 맞춤형 해외정보 제공

- TPP 발효시 수혜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등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 - 이를 위해, 중국에 편중된 해외 진출기업의 수출구조\*를 베트남 등으로 다각화하도록 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함.
- \* 2014년말 기준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.4%로, 제2위 수출국인 미국(12.3%)의 2배 이상을 차지
- 아울러, 국가별 유망 산업정보를 해외 진출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문의 :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1팀  
책임조사역 박종국 (02-6255-5704)  
[parkjk@koreaexim.go.kr](mailto:parkjk@koreaexim.go.kr)

< 붙임 1 >

## 아·태 지역 내 경제통합체 참가국 비교



출처: 한국수출입은행

< 붙임 2 >

## TPP 협정문 부문별 주요 내용

번호	제 목	주요 사항
1	최초규정 및 정의	- WTO 및 기체결된 국제계약 내 권리·의무 준수
2	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	- 상품 무역에 대해 각국의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
3	원산지	- 동일품목에 대해 단일 원산지 규정 및 완전누적 기준 적용
4	섬유 및 의류	-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원사기준 적용
5	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	- 세관행정의 예측가능성, 투명성, 신속성 제고
6	무역구제	- 관세철폐 결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경과기간 동안 관세 양허를 일시 중지 가능
7	위생 및 식물위생조치	-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통한 부당한 대우 금지
8	무역에 대한 기술장벽	- 기술규정 및 표준의 투명성 강화
9	투자	-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(포괄주의 방식)
10	국경간 서비스 공급	-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보장
11	금융서비스	-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제한조치 금지
12	기업인의 일시입국	- 역내 기업인의 일시 입국 관련 절차 규정
13	통신	-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경쟁 촉진 및 대안서비스 활성화
14	전자상거래	-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규정
15	정부조달	-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 개방
16	경쟁	- 경쟁을 보장하는 법을 마련 및 감독기구를 설립 및 운영
17	국영기업	- 통상적인 영업관행에 대한 국영기업의 준수 의무
18	지식재산권	- 바이오의약품 신제품에 대해 8년 보호기간 부여
19	노동	- 각 당사국은 1998년 ILO 선언상 기본권을 준수
20	환경	-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
21	협력 및 역량 강화	-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
22	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	-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내 공급망 참여 등을 지원
23	개발	- 포괄적 경제성장, 여성의 경제활동, 교육·연구 등에 대해 협력
24	중소기업	- 각 당사국은 정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
25	규제 조화	- 당사국간 규제조화는 권고 형식으로 규정
26	투명성 및 반부패	- 국내 법규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기회 보장
27	행정 및 제도규정	- 장관 또는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TPP 위원회 설치
28	분쟁해결	- 당사국간 협의와 패널의 판정 순으로 분쟁 해결
29	예외	- 당사국의 안보와 기타 공공이익을 위해 규제권한을 보장
30	최종규정	- 신규 국가의 가입 요청시 작업반을 설치하여 가입조건 협의

출처 : TPP 협정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성

## 한국의 양·다자간 FTA 체결 현황

구분	상대국	서명일자	발효일자
발효 (14건)	칠레*	2003. 2.	2004. 4.
	싱가포르*	2005. 8.	2006. 3.
	EFTA 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	2005.12.	2006. 9.
	ASEAN (말레이시아*, 싱가포르*, 베트남*, 미얀마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브루나이*, 라오스, 캄보디아, 태국)	2006. 8. (상품무역협정) 2007.11. (서비스협정) 2009. 6. (투자협정)	2007. 6. (상품무역협정) 2009. 5. (서비스협정) 2009. 9. (투자협정)
	인도	2009. 8.	2010. 1.
	EU (오스트리아, 벨기에, 영국, 체코, 키프로스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크로아티아)	2010.10.	2011. 7.
	페루*	2011. 3.	2011. 8.
	미국*	2007. 6.	2012. 3.
	터키 (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)	2012. 8.	2013. 5.
	호주*	2014. 4.	2014.12.
	캐나다*	2014. 9.	2015. 1.
	뉴질랜드*	2015. 3.	2015.12.
	베트남*	2015. 5.	2015.12.
	중국	2015. 6.	2015.12.
타결 (2건)	콜롬비아	2013. 2.	-
	터키 (서비스·투자협정)	2015. 2.	-
협상중 (4건)	한·중·일	-	-
	RCEP (한국, 중국, 일본*, 호주*, 뉴질랜드*, ASEAN)	-	-
	중미 6개국 (파나마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)	-	-
	에콰도르	-	-

\* TPP 참여국을 의미

출처 : 우리나라 FTA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

## < 참 고 문 헌 >

산업통상자원부, *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*, 2014  
\_\_\_\_\_, *TPP 협정문 설명 자료*, 2015. 11.

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대책본부, *TPP 협정의 개요*, 2015. 10.

한국무역협회, *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*, 2015. 11.

한국수출입은행, *아태지역 경제통합 추진 배경 및 동향*, 2013. 10.

호주 외교통상부, *TPP 협정문 원문*, 2015.11.

国家信息中心、经济预测部, 「三大战略: 助跑中国经济」, 2015. 4

TPP重构世界贸易版图 中国淡定应对, 「第一财经日报」, 2015. 10

BMI, *TPP : Agrebusiness winners and losers*, 2015. 11

\_\_\_\_\_, *TPP : Winners and Losers*, 2015. 11

\_\_\_\_\_, *TPP Ratification likely in 2017*, 2015. 11

한국일보(<http://news.hankooki.com>)

아시아경제(<http://view.asiae.co.kr>)

이데일리(<http://www.edaily.co.kr>)